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규조문대비표(차세대 오픈일 개정)

구 분	현 재	개정(안)	비 고
제3조(위탁증거금)		고객은 매매를 위탁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통합증거금 도입 및 해외주식 미수거래 가능에 따른 증거금 납부조항 신설
제5조(결제불이행 시의 처리)	① 고객이 결제기일 내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그 밖의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 할 수 있다.	① 고객이 결제기일 내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그 밖의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며, 고객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그 밖의 증권의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임의처분 수량 산정 방식 및 처분 순서 추가

제7조(환전 및 송금 등)	2.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 및 외화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u>회사는 환전일을 외화증권매수의 경우에는 고객이 매매주문하기 전에 지정한 날(매매주문일 또는 매매주문일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로 할 수 있다.</u>	2.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 및 외화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환전의 시기는 회사가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한 결제일 이내(결제일 포함)로 한다.	환전의 시기 변경
제7조(환전 및 송금 등)	6. 환전에 따른 환율은 <u>제2호의 환전일에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서의 외화와 외화간의 환전은 해당 외국보관기관이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u>	6. 고객이 직접 처리하는 환전에 따른 환율은 환전일에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 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해외주식 매매 결제로 인한 자동환전 처리 시에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결제환율이 적용되며, 해외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환율은 외국환증개에서 제공하는 기준환율이 적용된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서의 외화와 외화간의 환전은 해당 외국보관기관이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해외주식 결제 및 해외자산 평가 시 적용되는 환율 명시

〈별첨〉1

1. 제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 매수 시 위탁증거금 = 주문수량 x 주문가격 x 매수 시 종목별 증거금을

* 매도 시 위탁증거금 = 매도증권 100%

* 증거금유형별 매수시 위탁증거금을

증거금 유형	종목별 증거금	종목증거금율	총증거금율	현금증거금율
		20%	20%	20%
		30%	30%	30%
		40%	40%	40%
		50%	50%	50%
		100%	100%	100%
	100% 증거금	종목증거금율	총증거금율	현금증거금율
		20%	100%	100%
		30%		
		40%		
		50%		
		100%		

위탁증거금 안내

* 증권저축계좌, 증거금100%적용계좌는 종목별 증거금과 관계없이 위탁증거금 100% 징수

* CMA계좌의 CMA RP 평가금액(단 평가 가능한 RP는 개별상품(위탁매매 포함)매매가 가능한 CMA계좌에서 자동매입하는 RP로 한정)은 해당 계좌의 위탁증거금 납부시 현금으로 사용 가능

* 고객 신청에 의한 회사 심사 후 상기 기재된 증거금 이외 특례 증거금 적용 가능하며, 고객의 특례증거금은 고객 별도 확인

〈별첨〉2		2. 제 5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임의처분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 반대매매수량 = 미수금(결제일까지의 이자포함) / 수량산정기준 가격 * 수량산정기준가격은 중국주식은 전일종가의 -10%, 그 외의 온 라인주문가능 국가는 -15%로 할인하여 산정 〈투자사례〉 원화미수금 1,000 / 전일종가 HKD 5인 홍콩주식 400주 보유 *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 함할 경우 결제시 필요한 금액 증가) * 원화와 홍콩달러 환율을 1:1이라고 가정 1) 기준가격 HKD4.25 (= 5 * 85%) 2) 산정수량 236주 (= 1,000 / 4.25)	임의처분 수량 산정 방법 정의
〈별첨〉3		3. 제 5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그 밖의 증권의 처분 순서는 다음과 같다. 국가별 반대매매 순서는 국내를 최우선으로 하며, 그 외의 국가는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며 실시간 환전이 가능한 국가 중 주식거래 개장 시간이 빠른 국가 순으로 실행	임의처분 순서 정의